

「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1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19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0년 10월 19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술지원과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과 「농촌진흥법」에 따라 우리군 농업인의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자율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여, 우리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사업의 내용 및 방법 등 (안 제4조 ~ 제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#### ○ 본 조례안

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, 농업·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내용 안 제5조에서는 전문기관 교육위탁 안 제6조에서는 자체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#### ○ 조례안은 「농촌진흥법」 상

“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실시 규정하고 농업인 조직을 육성할 수 있음”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보급·지도와 농촌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기술의 습득, 농업·농촌의 이해 및 정보공유를 위한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인학습단체”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.
  - 가. 한국농촌지도자평창군연합회
  - 나. 한국생활개선평창군연합회
  - 다. 한국농업경영인평창군연합회
  - 라. 한국여성농업인평창군연합회
  - 마. 평창군4-H연합회(「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」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)
  - 바. 한국쌀전업농평창군연합회
2. “농촌지도사업”이란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3. “교육훈련사업”이란 「농촌진흥법」 제2조제4호 나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(절차, 방향 등)에 관한 사항
2.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3.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4.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
5.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 수요조사 시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.

**제4조(지원 사업 내용)**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.

1. 과학영농 및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
2. 선진농업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국내·외 연수
3.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활동 지원
4.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

5. 농업인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
6.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
7. 농업인의 일과 생활 균형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교육·연구사업
8. 평창군 농업인교육관 내 농업인학습단체 전용 공간 제공
9.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5조(교육 등 위탁)**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고,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자체활동 지원)**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 사업 외에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촌지도 사업 또는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된 자체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「평창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」는 폐지한다